



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(약칭: 실험동물법)

[시행 2023. 4. 27.] [법률 제18853호, 2022. 4. 26., 타법개정]

식품의약품안전처(임상정책과) 043-719-1875

- 제9조(실험동물의 사용 등)** ① 동물실험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아닌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7. 12. 19.>
1. 다른 동물실험시설
 2.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
 3.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실험동물공급자
- ②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실험동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실험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1. 18., 2013. 3. 23.>

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(약칭: 실험동물법 시행령)

[시행 2022. 12. 20.] [대통령령 제33112호, 2022. 12. 20., 타법개정]



식품의약품안전처(임상정책과) 043-719-1875

제2조(동물실험시설) 「실험동물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. <개정 2010. 3. 15., 2012. 6. 7., 2013. 3. 23., 2020. 3. 3., 2020. 4. 28., 2020. 8. 27.>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제조·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
 - 가.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식품
 - 나.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건강기능식품
 - 다. 「약사법」에 따른 의약품·의약외품 또는 「침단체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(동물용 의약품·의약외품 또는 동물용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제외한다)
 - 라. 「의료기기법」에 따른 의료기기 또는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(동물용 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제외한다)
 - 마. 「화장품법」에 따른 화장품
 - 바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마약
2.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
3.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
4. 「보건환경연구원법」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
5.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개발, 안전관리 또는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
6.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개발, 안전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

제8조(우선 사용 대상 실험동물) 법 제9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”이란 마우스(mouse), 랫드(rat), 햄스터(hamster), 저빌(gerbil), 기니피그(guinea pig), 토끼, 개, 돼지 또는 원숭이를 말한다.